

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11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7. 10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7. 1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7. 29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예술과장 최다원)

가. 개정이유

-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과 2026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과제에 따라, 고성군 박물관 시설 대관료 반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관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운영자와 사용자에게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별표 2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(안 제19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제2항(소비자분쟁의 해결)
-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(소비자분쟁해결기준)
-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
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 - 개선의견 미반영[복지지원과-14996호(2026. 4. 2.)]

4) 기 타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741호
 - 예고기간: 2026. 3. 30.~ 2026. 4. 20.(21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19조) 대관료 반환 규정을 “납부된 대관료”에서 “이미 납부한 대관료”로 명확히 하고, 반환 여부를 “전액 반환할 수 있다”에서 “반환한다”로 정비하며, 반환 기준이 없는 사항은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따르도록 하여 이용자와 운영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반환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함.

나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박물관 대관료 반환 기준을 관련 법령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에만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7. 2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